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

<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>

2020. 7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1. 왜 디지털금융인가?	1
2.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	3
II. 추진 과제	6
1.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	7
2.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	15
3.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	19
4.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	25
III. 기대 효과	29
IV. 향후 추진계획	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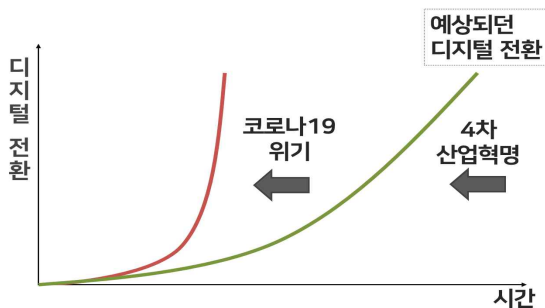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

1. 왜 디지털금융인가?

(1) 금융의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

- 4차 산업혁명,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
 -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·AI·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·Player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
 - * 기존 금융회사의 대내외 디지털화 촉진,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,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Big tech 및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분야 진출 등
 -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, 금융회사의 채택·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·비대면화를 심화
- '디지털금융'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서 전자적 방식의 결제·송금·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*으로 진화 중
 - * 온라인 포털('거래 플랫폼')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('혁신 플랫폼')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
 - 결제·송금의 간편·다양화, 인증·신원확인 기술의 발전, 금융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·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
 - 이용자 네트워크,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'디지털금융'과 '데이터경제'의 연계를 통해 경쟁·혁신을 촉진

<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>



< 지급결제시장의 발전 >



(2) 디지털금융의 중요성

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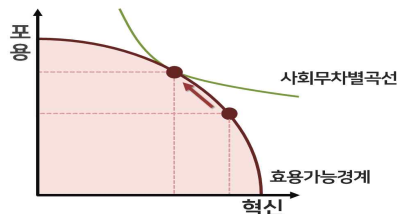
①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*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

* 글로벌 금융-ICT산업간 M&A : '09년 223건 → '16년 472건 (112%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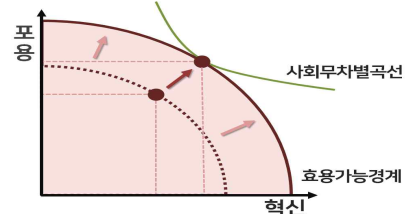
②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(Frontier)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

* "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"(BIS 부총재, '18.11.)

< 기존의 혁신과 포용의 관계 >



< 금융의 경계 확대 >



③ AI·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

□ 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·제도를 정비

① (지급결제) EU 「지급결제산업지침」 개정(Payment Services Directive 2, PSD2)('18.)

* (英) Payment Services Regulations('17.) (싱가포르) Payment Services Act('20.)

② (인증) EU 「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(eIDAS)」 제정('16.)

③ (플랫폼) EU 「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」 제정('20.)

□ 그러나,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하고,

○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은 '06년 제정 ('07년 시행) 후 큰 변화 없이*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

*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

2.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

(1) [산업]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

- 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
 - 제정 당시('06.)의 세분화(7개)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용·복합서비스가 곤란
 - * EU는 PSD 개정(PSD2)을 통해 MyPayment와 MyData를 새로이 도입('18.)
 -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

< 전자금융산업 자본금 비교 >



< 국가별 유니콘 보유 현황('19.) >



- 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
 -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'계좌 기반의 선·직불 결제'와 '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'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

<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이용비중 >



(2) [이용자]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

□ 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

- 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(선불충전금)이 빠르게 증가
('16년 1조원 → '19년 1.7조원)

※ (참고) BIS는 결제분야 빅테크기업이 보유한 고객자금(Float: 선불충전금)이 해당 기업의 내부자금(Captive Funding)화되고 있음을 지적('18.12월)

- ②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·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
- ③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,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



(3) [인프라]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

□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·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

- ①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

* '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(17%)를 차지

- ②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·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·제도적인 뒷받침*이 필요

* IMF·BIS는 오픈뱅킹 및 금융시장 인프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지속 제기

③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*의 금융업 진출**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

* ICT·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(Google, Amazon, Facebook, Apple, Alibaba 등)

** Alibaba 자회사인 Ant Financial의 MMF 판매, Amazon의 Pay-Lending 서비스 등

(4) [보안]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

□ 클라우드·빅데이터·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(Cyber Security)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

* (G20, '17.8./IMF, '18.6.) "사이버위협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"

①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,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도 심화

*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건수 : ('16.) 37만건 → ('19.) 275만건

② 신종 사이버 공격,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(IT) 부문을 넘어 전사적(Enterprise-wide) 대응이 필요

- 특히,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(BCP, Business Continuity Plan),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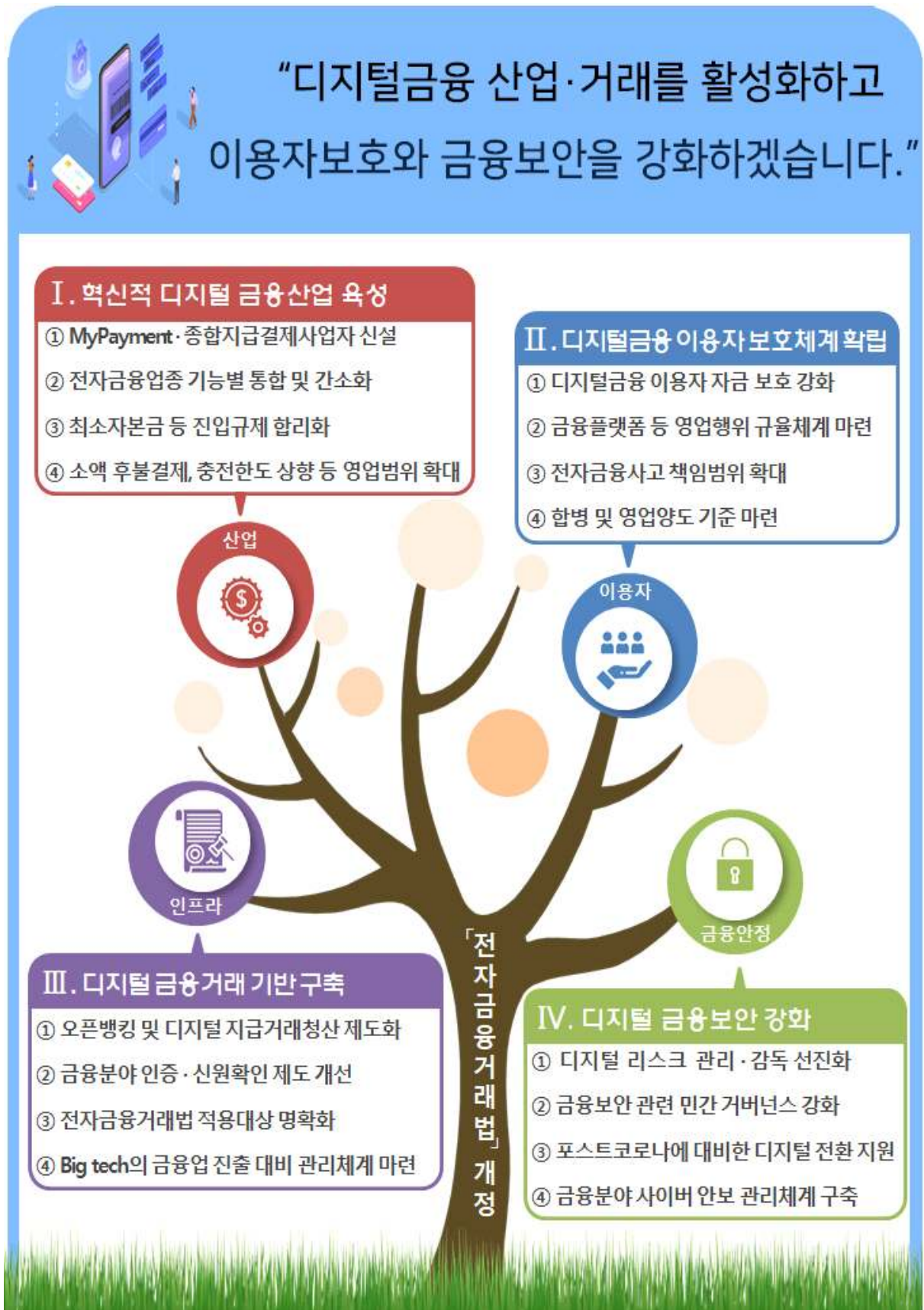
③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·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

④ 인간안보(Human Security)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·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

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, 데이터3법 개정 에 이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

- ①국민의 경제·금융생활의 편의·안전성을 높이고, ②금융산업의 혁신·경쟁을 촉진하며, ③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필요

II. 추진 과제



제1과제

[산업]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(Players) 육성

혁신적 핀테크·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운영의 폭을 넓혀 지속 성장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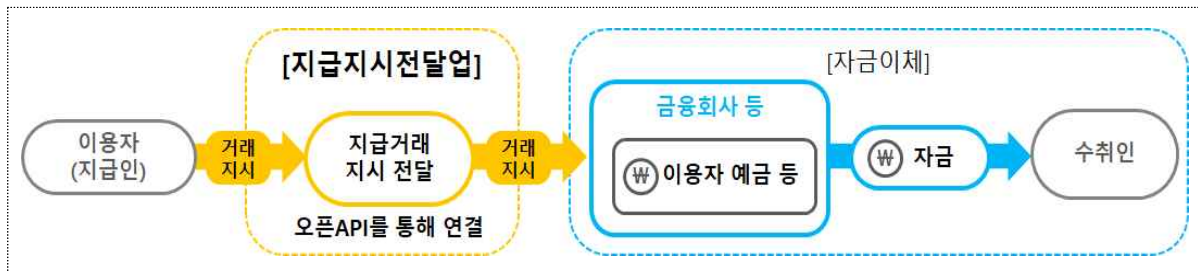
1. 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·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

(1) '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' 도입

- (내용) 이용자의 결제·송금 지시(지급지시)를 받아,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 신설 (EU PSD2, '18.1월 도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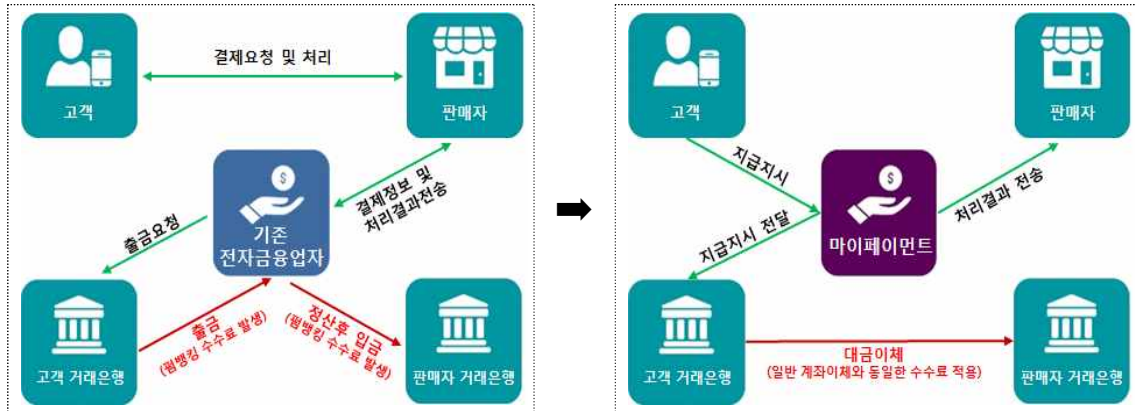
- ▶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,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

< 지급지시전달업 업무체계 >



- 핀테크·금융회사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플라이센스 역할
 -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으므로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
- (효과)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의 증대가 기대
 - ①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·결제가 가능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·거래리스크의 절감 가능

<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: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>



- ②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(이자 수취)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
- ③ 마이데이터(MyData) 등과 연계로 조회·이체·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 고도화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창출

(2) '종합지급결제사업자' 지정

□ (목적)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* 도입

* (해외사례) EU·영국: 'Electronic Money Institution', 싱가포르: 'Payment Institution' 등

-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·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
▶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(Payment Account) 발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

□ (업무) 국민들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전자금융업자(대금결제업·자금이체업 등) 대비 업무범위를 확대

- ①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·대금결제업·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 가능

②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, 카드대금·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 (예대 업무 불가)

*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연계 계좌만 개설 가능

- ▶ (이용자 측면)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·출금 이체, 법인 지급 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
- ▶ (사업자 측면) 금융결제망 참가기관(은행 등)의 이체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서 금융결제망에 참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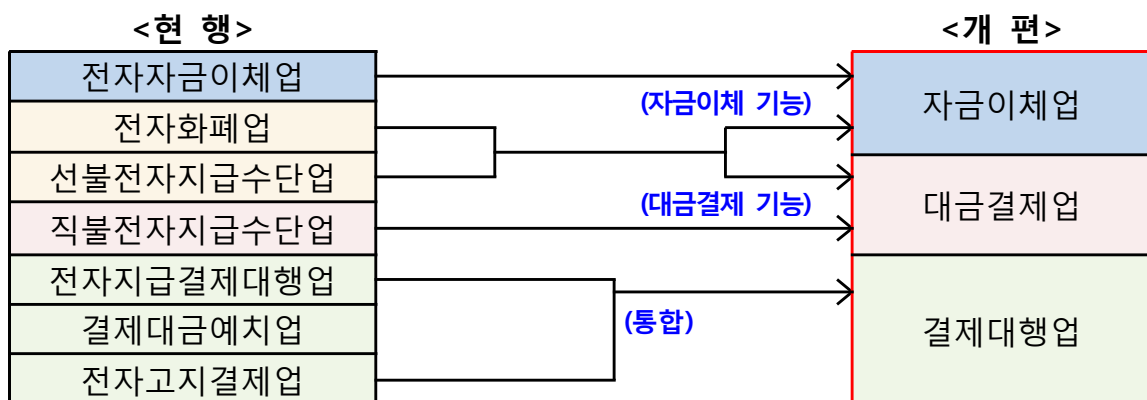
③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·자금이체의 한도 상향 등
→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

□ (관리감독) 전자금융업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지정하고, 대형 사업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감독

- ①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·이용자보호 등 규제
- ②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, 자금세탁방지(AML)·보이스피싱 등 규제
- ③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(200억원), 전산역량 요건 등
- ④ 금융안정,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

2.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·간소화 [現 7개 → 3개]

□ 서비스 간 융·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(결제·송금·대행)로 통합·단순화



① (자금이체업)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 (현재의 전자자금이체업, 선불업)

-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입금·출금 이체 권한을 부여하여 간편 송금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
- 송금 절차에 직접 관여*하면서 대금결제 없이도 자금이동**이 가능하므로 자금세탁방지·이용자보호 등의 규제는 강화

* (지급지시전달업) 자금이동 지시가 가능하나 송금 절차에 직접 개입 불가

** (대금결제업) 재화·용역의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결제자금 이동만 가능

② (대금결제업)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·용역의 대가를 결제 (현재의 선·직불업, 전자화폐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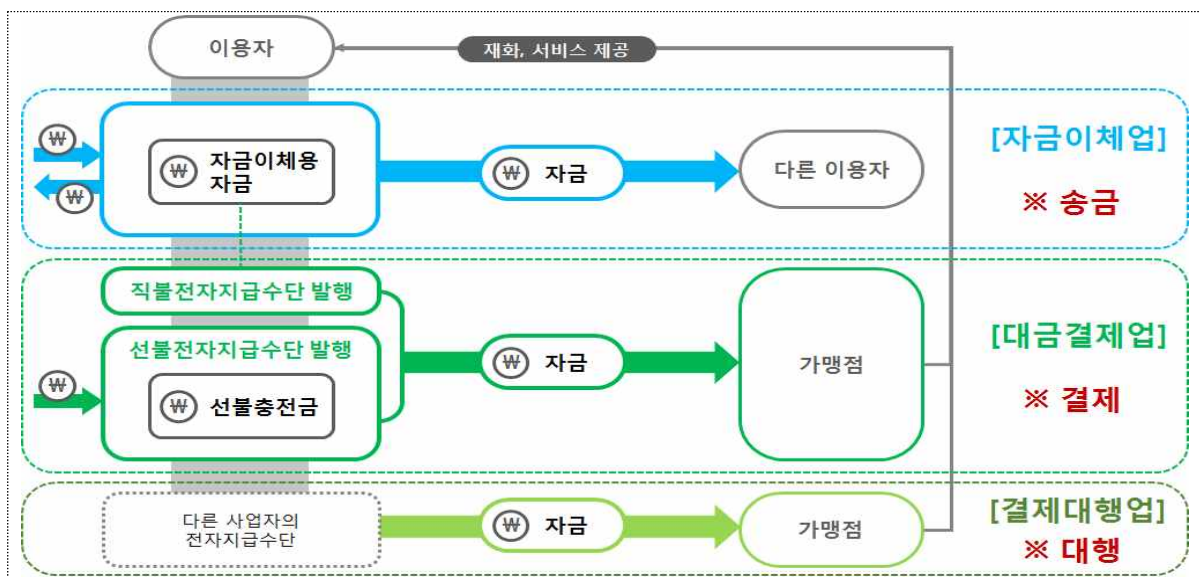
- 선·직불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·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개발을 촉진

③ (결제대행업) 결제·정산·예치·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*를 제공

(현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결제대금예치업, 전자고지결제업)

* (예) 가맹점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결제대행(PG)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면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(Escrow)와 대금 고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

< 업종 통합·개편 후 업무체계 >



- (리스크 관리) 기능별 개편으로 업종별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 되어 자본금 등 진입·영업·보안 규제의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

< 업종 개편에 따른 단계별 리스크 수준 >

구 분	규제수준	보이스피싱·자금세탁방지	이용자 보호	상호간 호환	금융보안
종합지급결제업	높음 ↑ (단계적) ↓ 낮음	본인확인 (強)	이용자 보호 (強)	거래표준 要 (強)	공통 적용
자금이체업		본인확인 (中)	이용자 보호 (中)	거래표준 要 (中)	
대금결제업		본인확인 (弱)	이용자 보호 (弱)	거래표준 要 (弱)	
결제대행업		-	가맹점 보호 (결제 보장)	거래표준 要 (弱)	
지급지시전달업		-	-	-	

① (신원확인)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

- 자금이체업자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, 대금결제업자는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, 규제를 차등 적용

* (자금이체업) 신원확인의 선택적 적용, (대금결제업)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같음

② (이용자 보호)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간편송금 수요에 즉시 대응하도록 이용자 자금 전부를 보호

- 대금결제업의 이용자 자금은 결제 대기자금으로서 보관되며 즉시 인출의 위험이 작아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*를 부과

* 미국·일본 등은 대금결제업에 대해 이용자 자금의 50%만 보호 의무를 부과

③ (금융보안) 원칙적으로 공통 적용하나, 인력·거래규모, 영업범위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, 직무분리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차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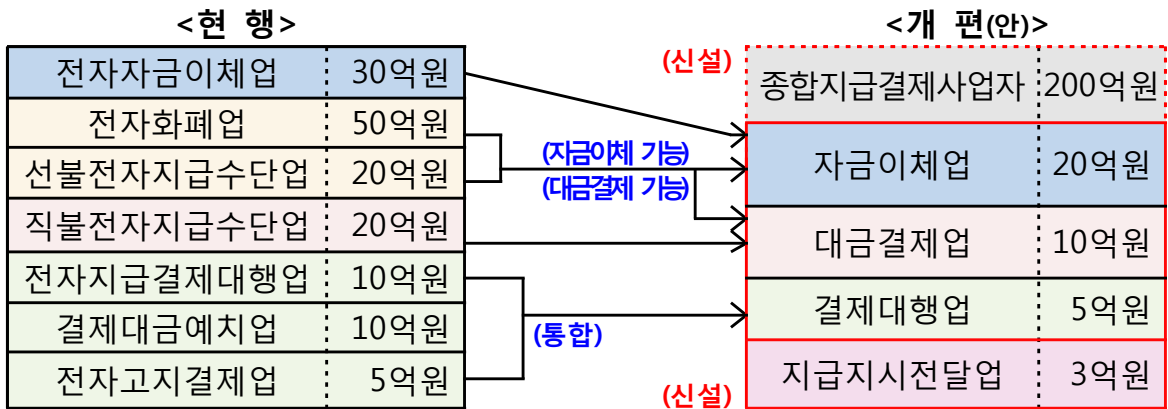
* (대금결제업 이상) 전사적 내부통제, (결제대행업 이하) 핵심업무 내부통제, 직무분리 등 완화

④ (건전성 규제) 이용자 보호 강화 및 ICT 융합이라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, 은행·보험 등 일반 금융업권과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

* 최소자본금 인하 및 영업규모별 차등, 충전금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합리화 등

3. 진입규제 합리화 : 최소자본금 인하 및 Small License

- (자본금 인하)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
 - 해외 주요 국가도 직접 여·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을 낮게 규정
 - * (영국) 전자화폐업 4.5억원, (미국) 자금이체업 3억원 (EU) 지급지시전달업 0.7억원 등
 -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,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(後述)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



-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
 - *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, 인터넷전문은행(250억원)보다 낮게 설정

- (Small License)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·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,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(Sliding Scale 방식)

▶ 분기별 거래액 100억원, 30억원 이하 → 최소자본금을 1/2, 1/4로 인하

* (영국) 분기별 거래액 약 120억원 이하인 전자금융업자에 특례 적용

- (진입방식 합리화)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(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)
 - 그 외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하되,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을 위해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

4. 소액 후불결제 ·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가능범위 확대

(1)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

□ (필요성) '계좌 기반의 선·직불 결제'를 보완하는 '신용 기반의 후불결제' 방식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

① (포용성) 사회초년생, 주부 등 금융소의 계층(Underbanked)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이력 축적에도 기여

-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카드 미소지자와 가맹점을 포용하여 수수료, 외상매출 부담 등을 크게 경감

② (혁신성) 비정형·비금융 데이터(Alternative Data)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통해 후불결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

③ (편리성) 전자상거래*시 일시적 자금 부족에도 거래의 신속·편리성을 보장하여 언택트 시대의 국민 편의를 제고

*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: '18년 24.1% (OECD 국가 중 1위)

④ (유니콘 육성) 글로벌 50대 유니콘(기업가치 1조원 이상) 중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개사*로 세계적인 추세

* 알리페이(기업가치 1위), Klarna(스웨덴 12위), Kabbage(미국, 43위), Afterpay(호주, 47위)

□ (내용)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(대금부족분)에 한하여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

① (한도)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(30만원)으로 우선 도입 하되, 이용자 편의성 및 이용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

※ (참고) 국내외 소액 후불결제 유사사례

- (국내)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 : 카드당 30만원

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: 통신사당 100만원(사업자 약관으로 한도 결정)

- (해외) 미국·호주 등의 후불결제 한도 : 업체당 1천~2천달러

- ② (심사)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심사를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
- ③ (기능제한) 신용카드와 달리,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·리볼빙·현금서비스 등을 엄격히 제한
- ④ (사업자 한도)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%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하여 후불결제가 주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
- ⑤ (건전성·영업행위 규제) 대손충당금 적립,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*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확립

*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

(2) 선불수단의 충전한도 상향

-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상향(2백만원* → 최대 5백만원**)하여 전자제품·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

* `08.7월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2백만원으로 설정한 후 상향 없이 유지

** 이용자별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 가능

- 이와 함께, 1일 총 이용한도(1천만원)를 신설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(분실·도난시 피해 최소화 등)

※ (참고) 자금이체업자의 이체한도(현행 200만원)는 선불수단 충전한도와 맞춰 상향하되, 시행시기는 「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」 등과 연계하여 추진

(3)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동태적 규제개선

-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동태적 규제개선과 연계되도록 반영

① 신원확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(신원확인·인증제도 개선과 연계)

② 출금이체 등의 방식의 다양화 (①·②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)

* (현행) 전화녹취, ARS 등 → (개선) SMS, 기존계좌 확인(1원 입금) 방식 등 추가

③ 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영역의 망분리 합리화 검토 (예: 개발·연구 등)

제2과제

[이용자]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

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

1.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

□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
간편결제·송금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

①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·신탁
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

-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%, 대금결제업만
하는 자는 50% 이상을 보호토록 함 (美·日과 동일 수준 보호)

< 해외의 이용자 자금 보호·관리 방식 >

국가	방식	대상 이용자 자금의 범위	보관 방식
미국, 일본		대금결제업 : 50% 자금이체업 : 100%	① 외부기관 보관 또는 ② 지급보증 보험 가입
중국		100%	중앙은행 예치

②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을 위한 주기적 보관·관리 규모 조정* (Reconciliation)을 의무화

* 이용자 자금과 외부기관 예치·신탁 규모를 비교하고 불일치시 보정

③ 이용자 자금관리를 위한 조직·인력의 구성, 위험관리 절차의
수립, 적절한 내부통제체계의 마련 등 관리 의무 부여

④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, 이용자 본인 자금을 대해 다른
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

* (英) 충전금에 대해 "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청구권에 우선함"을 법에 명시

※ (참고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전 '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' 마련(3분기)

2.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

- 금융회사 등의 영업 확장·경쟁,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 행위 규제를 확립
 -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, 타 금융 사업자와 연계·제휴 등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
 - 특히,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·머신러닝·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*을 제시

*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은 하위법령,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

- ① (오인방지) 금융상품·서비스의 제공, 연계·제휴시 **UI(User Interface)** 등을 통해 이용자가 명칭, 제조·판매·광고의 책임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
- ② (인위적 개입 금지)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변경, 편향된 상품노출 등의 개입행위 금지
- ③ (자유선택 보장) 이용자는 희망하는 금융상품·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약 체결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할 것
- ④ (공정·정확성 확보) 신기술에 따른 의사결정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설명 가능해야 하며, 편향된 의사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
- ⑤ (책임성 강화) 플랫폼의 AI·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·질의·이의제기 등이 제약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할 것

-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

- ① **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** (자금이체·대금결제업)
 - 단, 이용자 자금의 관리·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**리워드 형태의 지급** 등은 가능
- ② **가맹점의 불법·부당행위 여부**에 대한 **주기적 점검** (대금결제·결제대행업)
- ③ **이용자 자금의 직접 보유 금지** (지급지시전달업) 등

3.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

□ (내용)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의 책임(무과실책임)을 강화

-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인증수단 다양화, 충전한도 상향 등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성을 제고
- 이용자 측도 전자금융사고의 예방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

(국정과제) "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"

① (금융회사 등 책임 확대) 접근매체 위·변조, 해킹 등 한정된 책임을 '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·송금(무권한거래)'으로 확대

-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가 입증토록 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

* (EU, 美, 濠) : 무권한거래(Unauthorized Transaction)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

(예) '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'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, 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 (단,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)

구 분	현 행	개 선
금융회사 등에 책임이 부과되는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기술적 사고를 열거 ① 접근매체의 위·변조 (예: 공인인증서 복제) ② 금융회사 서버 등을 해킹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(예: 간편비밀번호 획득) ③ 전자적 전송·처리의 오류 <p>→ 이용자가 상기 사고유형에 해당함을 직접 주장·입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자금융사고를 포괄적으로 규정 ○ '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·송금' (무권한거래) <p>→ 금융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허용한 거래였음을 입증</p>

② (이용자 보호 합리화) 전자금융사고시에도 금융회사 등이 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

-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부분은 개선*하되 이용자의 합리적 주의 등 사고예방 협력 노력 등도 함께 고려

* 예) '접근매체 누설·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'는 고의·중과실에서 제외

구 분	현 행	개 선
금융회사 등이 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에 대해 약관에 규정한 경우 ① 인증서·OTP 등을 누설·노출·방치·제공·사용위임 ② 인증 관련 보안조치 불이행 등 (예: 보안프로그램 미설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협력 노력* 등을 부과

* (EU PSD2) 약관 준수,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,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

③ (보험 실효성 확보) 금융회사 등이 의무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 상향(현 1~20억원, 업종·규모별 차등)

※ (참고) 세부방안은 '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 TF'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·발표할 예정('20.3분기 중)

4. 합병·영업양도 등 기준 마련

□ 전자금융업자의 합병·영업양도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,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합리화

- ① 원칙적으로 신고제로서,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등 **이용자 보호**와 디지털 금융거래 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
- ② 이용자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, 합병·영업양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과 시장 안정성 등을 미리 검토
- ③ 사전 신고(인가)시 합병·영업양도 등의 **필요절차(신규등록·등록취소)**를 일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부담 및 불확실성을 해소

제3과제

(인프라)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

핀테크의 성장, 디지털 금융거래의 활성화,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금융안정의 확보를 위해 법 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

1.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

(1) 오픈뱅킹의 법제도화

- (필요성) 금융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지속·안정·확장성을 보장(현행 참가기관 협약으로 운영)

* 오픈뱅킹 등록계좌 : ('19.10.) 124만개 → ('20.6.) 6,588만개

※ (참고) IMF는 '19년 FSAP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'법적 근거를 마련(Legal Foundation)'할 것을 권고

- (내용) 다양한 참가자에 개방하는 지급결제시스템(오픈뱅킹)을 지정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화

① (참가기관) 은행,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(상호금융·저축은행·카드사 등)으로 참가기관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·자격을 규정

② (보안규율)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가기관이 준수하는 보안·인증·표준화·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제시

③ (협조의무) 참가기관에 오픈뱅킹 이용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부과

▶ 타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지시 등에 대한 처리

▶ 자사 채널 등에 비해 수수료, 처리 순서·시간 등에 있어 차별 금지

▶ 참가기관간 필요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

※ (참고)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계좌 기반의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

(2) 디지털 지급거래청산(Clearing) 제도화

□ (필요성) 오픈뱅킹을 비롯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(예 : 금융결제원)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

①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 (BOK-wire+, 소액결제시스템)의 변화
→ Big tech,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화

② 금융회사 외 Big tech, 핀테크 등의 청산의 외부·집중화를 통해
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청산비용 절감

* 중국은 알리페이 등 Big tech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렌(Nets-Union) 도입(18.)

③ 디지털금융 성장에 따른 무자격·국외 청산업자 난립 예방

④ BIS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법적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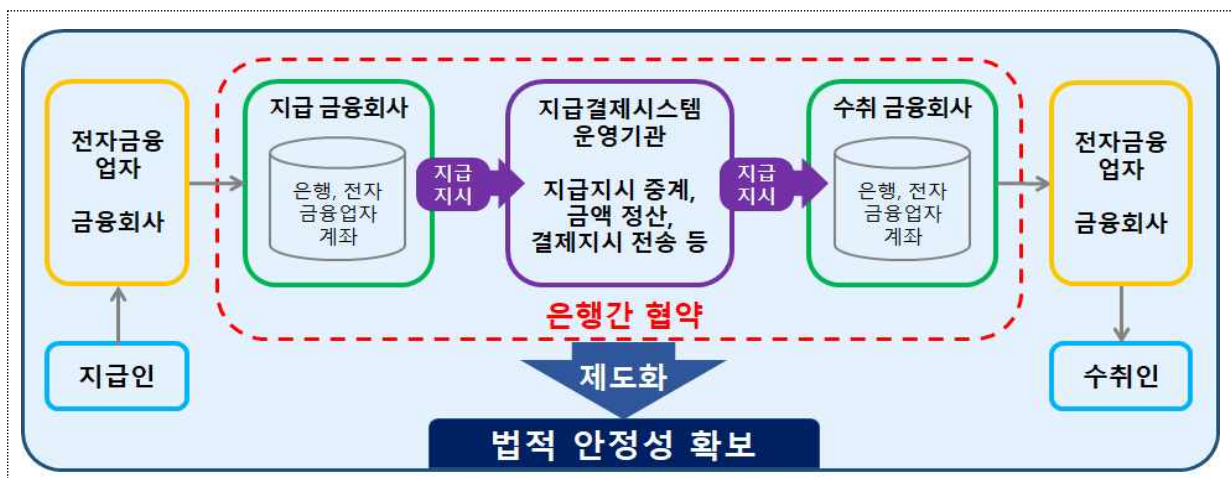
※ (참고) 국제결제은행(BIS)은 '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(12)'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'**법적 근거(Legal Basis)**'를 갖추어야 함을 제시

* 자본시장 청산결제시스템(CCP)도 국제논의 등을 반영, 기 법제화(「자본시장법」, 13.)

□ (내용)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지시의 확인·중계, 수취·지급 금액정산(Netting)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

○ 향후 글로벌 Big tech 등에 대해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산의무 부과 및 결제시스템 내 관리 가능

<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>



2. 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개선

(1) 금융분야 인증(Authentication) 제도의 합리적 정비

- (필요성)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*에 따라, 공인인증서를 전제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

* '20.5.20일 「전자서명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 → '20.12.10일 시행

- (내용) 전자금융거래의 편리·안전·보안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개발·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

① (기술중립성) 특정 인증기술에 대한 차별 없이 다양한 디지털 新기술이 인증수단에 활용될 수 있는 법체계 마련

-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수단간 표준화·연계 방안 등도 함께 검토

② (보안성)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, 보안성을 갖춘 인증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

* (예) 신원확인, 무결성, 부인방지기능 등 「전자서명법」 상 인증수단의 원칙 외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환경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원칙 마련

※ (참고) EU의 「전자신원확인·인증법(eIDAS)」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을 '적격·고급전자서명'으로 규정 →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통용 가능

③ (위험 수준별 차등화) 일정 금액 이상 온라인 거래 등 고위험 거래*시 강화된 인증방식 이용을 의무화

* 금융회사 등이 주기적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거래의 고위험 여부를 판단

※ (해외사례) EU의 「PSD2」의 강력한 이용자 인증(SCA,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)

- EU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·소유·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인 2팩터 인증 절차 적용 등을 의무화

(2) 신원확인(Identification) 제도 합리화

□ (필요성) 실명확인증표 중심*의 거래 관행이 디지털 新기술이 활용되는 대면·비대면 금융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

* '15년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 (①신분증 사본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중 2가지 확인) → 대부분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

○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디지털 新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의 보완 필요

□ (내용) 비대면·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거래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신원확인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
○ 다만, 국민 재산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신원확인의 기본 원칙은 견지하여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

① (다양화) 기존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안전·보안성이 확보되는 디지털 新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 허용

- 신기술 활용시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

* 금융규제 샌드박스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선 등으로 추진

: ① 분산신원확인(DID), ② 안면정보 인식, ③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

② (차등화) 업종별(종합·이체·결제), 고객별(신규·기존)로 신원확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

* 업종, 고객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별 금융리스크 수준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 고려

③ (법제화) 현행 유권해석·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명확성 제고

※ (참고) 세부방안은 '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 TF'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·발표할 예정('20.3분기 중)

3.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

(1) 국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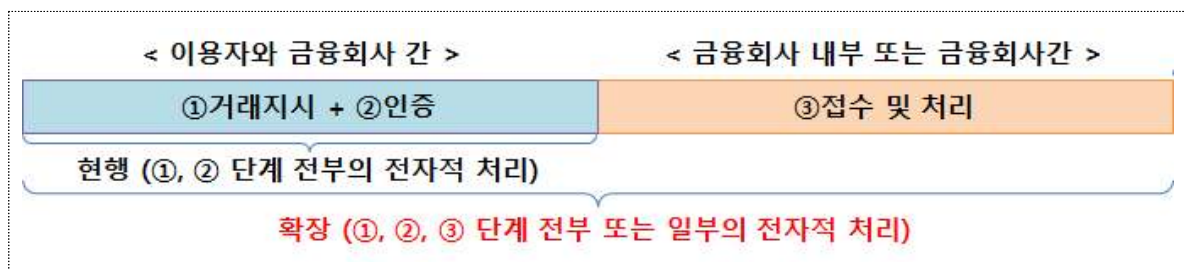
- (필요성)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·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
- (내용) 국내 이용자·가맹점·산업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자의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적용
 - * (유사 입법례) 「자본시장법」, 「공정거래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등
 - 국외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입·영업규제를 차별화 하되, 무등록·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은 엄격히 규제

(2)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거래 포섭

- 종전 '비대면 거래'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'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' 전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
- 금융보안 전반, 금융회사 배상책임, 약관, 분쟁처리 및 조정, 거래기록 보존 등에 대해 이용자 보호 범위가 확장

▶ (현행) 이용자와 금융회사간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
→ (개선) 금융서비스의 업무처리 과정에 전자적 장치가 이용되는 거래

<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>



4.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 추진

- Big tech의 지급결제 등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이 이용자 보호, 금융안정 등을 저해*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마련

* 고객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기반 시장지배력 남용, 기존 금융회사와 과당경쟁 등

① (외부청산 의무화) Big tech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여 「지급 - 청산 - 결제」의 과정을 투명화

- Big tech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

※ (참고) BIS는 중국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(왕렌)을 통한 청산 의무화를 통해 은행과 Big tech간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

② (합병·영업양수 사전 인가) Big tech의 전자금융업 합병·영업양수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 도입

③ (이용자 자금 보호) Big tech에 강화된 이용자보호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

④ (역외적용)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진입·영업 규제를 통해 글로벌 Big tech의 무분별한 영업을 엄격히 제한

- 한편, 글로벌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시 국내 금융회사, 디지털 기업(핀테크, Big tech)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

- 규제차익(Regulatory Arbitrage)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·Big tech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

-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도 검토
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확립하고, 민간·공공을 아우르는 사이버 리스크 통제 체계를 정립

1. 디지털 리스크 관리 · 감독 선진화

-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·검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면서 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
 - * 정부는 금융보안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(Principles-based approach), 결과 달성과정은 금융회사·전문가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, 책임성은 강화
 - 금융회사 등에 AI·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가이드를 미리 제시
 - 사후적발시에도 임직원 신분 제재 대신 기관 금전제재 등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역량 확충을 유도
-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금융의 IT아웃소싱 확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
 - 클라우드 사업자 등 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(Third Party)에 대해 직접 감독·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- * 현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간접감독,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
 - IT아웃소싱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합리적 책임 분담을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정비
- 금융위의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, 금융인프라 기관 등에 대한 금융보안 관련 조치명령권을 도입
 - * (유사 입법례) 「자본시장법」, 「보험업법」, 「신용정보법」 등에서는 既 도입
 - 사이버 공격, 대량의 정보유출 등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

2.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

-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(全社的) 관점에서 보안관제를 고려하도록 조직·내부통제체계 등을 선진화
- ① (계층적 방어체계) 현업·정보화(IT) 부서, 정보보호·준법감시, 내부감사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*를 구축
 - * 3선방어체계(Three Lines of Defence) : 영국 FSA(Financial Services Authority)가 조직의 리스크 관리·통제를 위해 고안한 조직모델로 다수 금융권, 정부기관 등에서 채택
- ② (CISO 권한 강화)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의 주요 회의 참여, 전사적 리스크 점검 등 권한 확대
 - ※ (현행) CISO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해킹,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 (개선) 금융보안 관점에서 현업부서의 FDS업무, IT업무 등에도 관여·점검 가능
- ③ (이사회 책임 강화) 중요 금융보안 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이사회·CEO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확립

3.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

- 코로나19 등에 따른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(BCP, Business Continuity Plan)*을 강화
 - * 금융회사 등이 재해 발생시에도 핵심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
-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기관 등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확대 적용
- 기술·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지 않는 금융보안 규제는 현대화
 - * 영업규모, 신기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무분리, 최소 전산인력(5명) 요건 등 개선

□ 업무지속계획(BCP),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,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*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

* 사이버공격,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(내부망), 인터넷용(외부망)으로 분리

○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사이버위협 수준,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*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

* 금융회사간 금융공동망을 통한 높은 연계성으로 실시간 자금이체 등이 용이 [英('08.~), 日('18.~) 등을 제외한 美國 등 주요국은 실시간 이체 미시행]

- ①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(비조치의견서) →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정비, POST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마련 등
-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'금융기술연구소'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, 망분리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·개발을 지원

※ (참고)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및 현황

- '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'공공 부문'의 망분리 제도를 '금융 분야'에 도입 →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

* '17년 전세계적 랜섬웨어(악성코드 일종)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 피해는 없었음

< 망분리 방식별 비교 >

구 분	단일망 사용(망분리X)	논리적 망분리	물리적 망분리
개 념	1대의 PC를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자유롭게 사용	1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S/W방식 분리	2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물리적 분리
구 성			
비 고	외부 해킹위험 높음	외부 해킹위험 존재	외부 해킹 경로 차단

※ 금융보안 규제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) 정비 TF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('20.4분기 중)

4.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

□ 금융안정 확보 및 국민 재산보호라는 금융보안의 특수성을 감안, 민간·공공을 아우르는 금융분야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

① (위기 대응체계)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·공공의 금융분야 방어체계 구축

▶ (공공) 금융분야 사이버안보(Cyber Security) 및 재난대응에 관한 **기본적 사항***을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명시

* ① 금융보안 재난대응 체계 정립, ② 금융분야 국가사이버 위기관리의 특수성 명시

▶ (민간) 금융보안원의 **법률상 지위 및 공적 역할*** 등을 명확화 →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**자율보안을 지원**하는 기능 강화

* ① 침해사고 대응, ② 금융ISAC(Information Sharing & Analysis Center), ③ FDS정보공유 등

▶ (민·관 협력) 금융 인프라 기관 등에 대한 민간·공공의 **합동 위기대응 훈련**을 정례화하고, **위기대응 매뉴얼**을 정비

② (디지털금융 협의회) 디지털금융의 이해관계 조정, 금융보안, 신기술 표준화 등을 위한 협의체(法定)를 구성·운영

- 학계·업계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, 민·관, 금융권·핀테크·Big tech 등이 함께하는 **소통·협력의 장**을 마련

<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(안) >



※ 법 개정 전이라도,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구성·운영을 추진 (‘20.4분기 중)

Ⅲ. 기대 효과

①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하여 디지털뉴딜 등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

① MyPayment*, Small License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

* 핀테크 기업 외에도 e-Commerce, MyData업체, 카드사 등이 진출 추진 중

② 소액 후불결제 허용,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, 인증산업 육성 등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사업 창출 및 도전 역량을 제고

③ MyPayment, 소액 후불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경쟁적 협력(Cooperation)이 확대

- 업권별 칸막이나 영역 다툼이 아닌 균형·확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외진출도 증가

④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 금융회사, 핀테크 기업 등에게도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공정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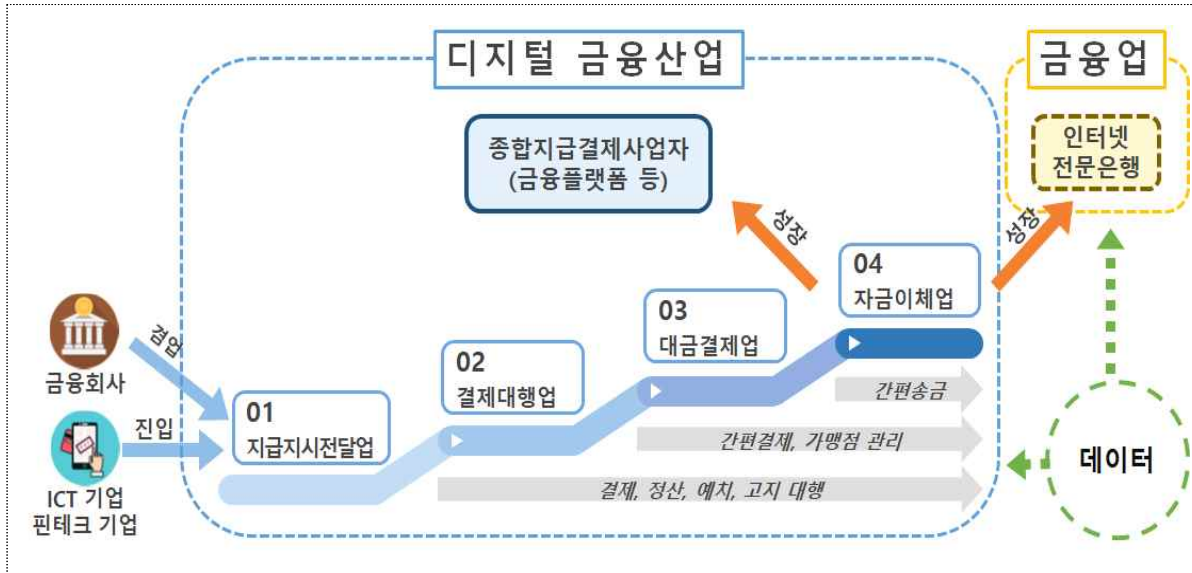
⑤ 데이터, 클라우드, 보안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

②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 유도

○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 기업의 유니콘 성장 및 해외진출 활성화 가능

[英 Revolut 사례] 환전 핀테크 기업에서 시작하여 선불업, 간편송금업으로 확장해 핀테크 유니콘으로서 은행업까지 진출

<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 (예시) >



③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금융의 효율성·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체감하고 편의가 증진

①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-stop으로 영위 가능

(사례① : MyPayment + MyData) 하나의 App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의 조회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,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(이체)까지 가능

(사례② : 종합지급결제사업자) 단일 플랫폼에서 간편결제·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 계좌에 기반한 급여 이체, 카드대금·보험료 납입 등 결제서비스 일괄 제공

② 편리하고 안전한 신기술이 인증·신원확인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접근·신속성이 향상

③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 확립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(Human Security)를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

④ 소액 후불결제, 인증·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·창의적 혁신서비스가 창출되고 혁신적 포용금융을 구현

- ④ **오픈뱅킹, 청산제도 등 BIS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확장·안정성을 제고**
 - ① **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의 제도화 및 이용자 자금 보호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투명성을 확보**
 - ② **역외적용 규정 마련, 진입규제 정비 등 글로벌 Big tech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보**
 - ③ **금융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인프라 Package (오픈뱅킹·청산제도·인증·보안 등)의 해외 수출도 기대**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'20년 하반기 중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추진

- '20년 3분기 중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
- 법 개정 전 실시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
 - *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, 행정지도(가이드라인),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
- 이번 방안의 세부·연관 과제는 전문가·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 발표

▶ 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혁신방안(3분기) ▶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(4분기)
▶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

- ➔ **국민들께서 이용자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되고**
 - '디지털금융'과 '데이터경제'의 동반 발전을 통해 **"우리가 표준이 되고, 세계가 되는"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**